

'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6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6.9.14(월)~9.29(화)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6.9.29(화)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들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신청 결과는 **10.16(금) 14:00, 16:00 2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광업 10.19(월)~10.23(금) /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0.26(월)~10.30(금)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붙임1 '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6.9.14(월)~9.29(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준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④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0.2(금)~10.15(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접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0.16(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광업 10.19(월)~10.23(금)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 10.26(월)~10.30(금)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가점 항목 (8개)** ①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5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⑦E-9 근로자 특화 훈련 참여 사업장(5점), ⑧외국인근로자 안전리더 지정·운영 사업장(5점)

□ **감점 항목 (8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 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①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②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③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④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붙임2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안내문

평소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귀사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주노동자 고용은 의사소통,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내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달리

국가 간의 신뢰는 물론 때로 우리나라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업주, 관리자와 동료들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곧 우리 사회와 기업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존중하는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줍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감독,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외국인 고용 제한 등 각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최근 주요 인권침해 사례

- ▶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하는 등 집단 괴롭힘 발생
- ▶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 등 중상해 발생
- ▶ 이주노동자를 박치기 등의 방법으로 폭행

이주노동자는 가족과 떨어져 머나먼 낯선 땅을 찾아온 우리의 손님이자 소중한 동료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우 아래 편안하게 일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관리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상담·지원이 가능합니다

붙임3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 및 체류지원과 농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사업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가 노후·취약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최대 18백만원까지 시설 및 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채광환기 설비, 냉난방 설비, 소방시설 등 개보수비

- (지원 비율) 국비 25~45%, 지방비 25~45%, 자부담 10~50%
 - 임차 개보수 시 : 국비(45%) 9백만원, 지방비(45%) 9백만원, 자부담(10%) 2백만원
 - 자가 개보수 시 : 국비(25%) 5백만원, 지방비(25%) 5백만원, 자부담(50%) 10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 * 「보조금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안전한 숙소를 제공하고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031-290-0876)